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22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29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관련 [별표]위임 전결사항 중 1.공통사항의 복무 중 대표이사 항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조퇴·외출·출장명령 및 복명 전결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한다.
- (3)연가·공가·병가·특별휴가 허가 전결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한다.
- (4)대체휴무 전결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한다.
- (7)유연근무제 전결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